

【문 1】 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어음이나 수표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의 방법으로 집행하나,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서가 금지된 것은 집행 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필요하다.
- ②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본래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보전처분은 그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불일 여지가 없으며, 발령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실무상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한다.

【문 2】 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인 간접강제는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 ②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③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으로서의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 ④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3】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②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 ④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범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 금전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 ③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인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경합이 생긴다.
- ④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문 5】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기록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매각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고 그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6】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문 7】 보전의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명령이의절차에서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보전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선행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의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문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게시판공고와는 별도로 신문에 게재하되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는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게재하여야 하며, 입찰실시 후에 그 기간을 어긴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②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최근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추완이 허용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④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일괄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하고, 일괄지정 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9】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②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 ④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목적인 특정 부분이 경매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등기기록상의 지목이 농지인 때에는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정확히 기재하고 현장사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상의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 ④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없다하더라도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가나 경매절차 진행 중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재평가사유에 해당한다.

【문11】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인도집행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별도의 소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는 없다.
- ④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하여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의 결정은 그 경정결과와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13】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사안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사안에서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다.
- ④ 사안에서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②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대신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도 매각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②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고지·최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최선순위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후와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계산서상 금액이 집행기록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문16】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점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 ④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17】 보전처분절차에서 승계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가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위 승계에는 일반승계 이외에 특정승계도 포함된다.
- ② 보전집행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보전명령에 따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문1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 ③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 ④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된다.

【문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③ 임의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20】 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집행법원이 개인과산에서의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 계속 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항고법원은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